

# 11.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改正令

(관련 주요내용 발췌)

大統領令 第14,084號, 1993. 12. 3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절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60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63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③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또

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제주중문관광단지
3. 제주성산포관광단지
4. 해남화원관광단지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말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제주도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으로 본다.

1.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그가 속하여 있는 종중을 포함한다.)

2. 제주도에 5년이상 거주한 자

③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조·가공단지사업의 시행자

④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림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가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②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단서의 규모(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를 말한다.

③법 제66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④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 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가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⑥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3.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4.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⑦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2.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폐업하거나 해산하여 주택을 건

설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3.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신축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⑧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와 그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⑨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4.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

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⑪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를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주택 또는 기숙사를 준공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한다.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한다.

**제65조(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이라 함은 종업원을 위한 국민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주택연면적의 2배의 면적을 말한다.

③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출자자(상장법인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종업원을 말한다.

④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

는 취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신축 또는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사원용주택의 가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제4항본문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본문에 의한 임대 또는 분양일까지는 사원용주택의 가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이상인 것으로 본다.

⑥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양도명세서 및 사원용주택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원용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사원용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등의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⑦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동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6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전액

⑧법 제68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원용주택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명령 또는 이전명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전함에 따라 사원용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⑨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

하는 건물은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⑩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또는 주택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제66조(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특례) ①법 제69조제2항제2호단서에서 “할부판매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1982년 5월 18일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인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4년 6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제73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법 제77

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8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1회에 5호이상(중소기업은 1호이상)의 무주택중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제6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②법 제8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라 함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③법 제8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당해 주택등의 취득금액} \times \frac{10}{100} \times$$

$\frac{\text{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text{주택등의 총연면적}}$

- ④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비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7조(임대사업용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6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6조(부가가치세 면제등) ①법 제10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②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 다.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 면어업용선박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에 사용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③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업경  
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  
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  
은 재무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⑤법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및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  
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  
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9조제6호의 경우에는 재무부  
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0조제1항(제96조제2항 제2호  
의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단위농업협  
동조합장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면세공급확인서

⑥법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⑦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2  
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  
5항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  
은 때에 해당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⑧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  
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7조(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1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합  
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33조·제38조·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제1항·제76조  
및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2항

제1호·제3호·동조제5항 및 동조제7항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2.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법 제123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전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

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법 제123조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외환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용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법 제124조제2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법 제124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가산액을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124조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제110조(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종합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 다.

1.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가.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3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나.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과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제22조제4항·제23조제2항·제34조제5항·제50조제6항 및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비금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

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감면신청 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등) ①**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0조제7항단서·제41조제6항단서·제42조제10항단서·제65조제6항단서·제67조제8항단서 및 제68조제7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세액감면신청(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종전의 제36조·제36조의2·제38조의2·제55조의9·제55조의10·제55조의11 및 제55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나)의 기한내에 세액감

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66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동법률의 시행일전에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설비투자촉진법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 과학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강하여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등을 손비인정 또는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연구 및 개발업등을 그 대상업종에 추가함(령 제8조·제9조·별표3 및 별표4).
- 나. 중소기업등이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 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993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령 제24조).
- 다. 조세감면신청을 양도세감면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당초 신고기한의 경과후 1년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30조·제41조·제42조·제65조·제67조·제68조·제70조 및 제71조)
- 라. 대도시공장이나 법인본사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도시공장등의 양도과세액중 지방공장등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과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이연 또는 양도세의 감면을 받도록 하고, 지방공장등의 기계장치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도록 함(령 제30조·제41조·제42조·제67조 및 제68조)
-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조정등의 의무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59조제2항).
- 바. 법의 개정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가입대상을 만20세이상의 무주택자로 하고, 저축한도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하는 등 세금우대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75조제9항).
- 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우대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지급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3년이상 예탁한 경우에 한하여 우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이상 예탁한 경우에도 우대하도록 함(령 제78조제1항제4호).

아.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로 처리함에 있어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산업시스템 및 환경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령 별표2).

자. 기타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투자에 있어서 연도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체계 및 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함(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제7항·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7항). 〈법제처 제공〉

**안버리는 등산길 주워오는 하산길**